

## 제8기

#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(안) 보고



성북구보건소  
(건강정책과)

# 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(안) 보고

의안 번호	55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6년 2월  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「지역보건법」 제7조에 의거 「제8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(안)」에 대하여 성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에 보고 드림

## 2. 주요내용

가. 수립근거: 「지역보건법」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을 4년\*마다 수립,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

※ 제8기: 2023년 ~ 2026년

나. 사업목표

-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에 기여

다. 주요내용

- 3차년도(2025년) 시행결과에 대한 성과 종합 분석
- 4차년도(2026년) 수행 세부과제 및 주요성과지표 선정
- 감염병 위기 시 위기대응을 위한 보건소 자체 업무조정계획 수립

라. 향후계획: 2026. 2월 말 서울시 제출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역보건법」,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협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붙임 1.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관련 규정

2.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시행결과 및 4차년도 시행계획(별책)

[붙임]

## 지역보건법

### 제7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.

1.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
2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기·단기 공급대책
3. 인력·조직·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
4.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
5.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해당 시·군·구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보건의료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군·구의회에 보고하고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및 제3항에 따라 관할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받은 시·도지사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·도(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시·도의회에 보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은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 기본계획,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「국민건강증진법」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. 15.>
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관련기관·단체, 학교, 직장 등에 중복·유사 사업의 조정 등에 관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⑦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·도지사에게, 시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세부 내용, 수립 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

### 제2조(기능)

-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(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조정한다. (개정 2019.3.7, 2020.12.31.)
  1. 국민건강증진법(이하 “법” 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(개정 2020.12.31.)
  2.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3.7, 2020.12.31.)
  3.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」 제7조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3.7.)
  4.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증진에 관한 사항 (개정 2019.3.7.)
- ② 협의회는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「지역보건법」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(신설 2019.3.7.) (개정 2020.12.31.)

### 제3조(구성)

- 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개정 2019.3.7, 2020.12.31.)
- ② 위원은 구민·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 (개정 2020.12.31.)
- ③ 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보건소장이 된다.[전문개정 1999. 12. 30]